

2009년 한국지방계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 2009년 2월 19일(목). 13:30-17:30

장소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 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

주최 : 한국지방계약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후원 : 행정안전부

개 회 사

2009년이 엇그제 시작되는가 하더니 훌쩍 입춘이 지났습니다. 봄 내음이 조금씩 풍겨오는 이때 건강히 잘 지내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지방계약학회에서 '지방계약과 조달행정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여러분을 반가운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조달청에서 맡고 있던 조달업무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지방계약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뀐 지방계약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지방조달업무의 개선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혁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춘계학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 세분의 발표, 그리고 토론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 더욱 알찬 학술대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뵈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길 빌며 이만 줄입니다.

한국지방계약학회

학 회 장 김 혁

축 사

정 헌 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2005년까지 국가계약 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행정의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계약유형이 점차 늘어나게 됨에 따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계약제도가 요구되었고,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재해복구공사의 복구지연문제, 무더기 수의계약 체결문제 등도 지방계약법의 제정을 더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의 필요성에 따라 참여정부의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을 분법하면서 2005.8.4일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2006.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정된 지방계약법은 ①지방의 특수성반영을 반영하여 재해복구 공사의 개산계약제도와 소액보수·복구공사의 연간단가계약제도 등을 도입하고, ②입찰·계약·시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중·대형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계약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 원은 당해 지자체와 본인 명의의 영리목적의 거래 등을 금지하였으며, ③ 계약의 경제성·효율성 확대 측면에서는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해당 시·도에서 입찰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도”시행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시 전자견적제출을 의무화하고 내역을 공개함에 따라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수해복구사업의 개산계약제도 도입으로 복구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지방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08년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지방예산절감 및 지역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의 제도개선('08.5.13)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2009년에는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예산절감과 최적가치 낙찰제도 도입 등 선진형 계약제도 구축을 위한 지방계약법이 개정 공포(2009.2.6)되어 지방계약분야는 또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각종 사례연구 및 선진국의 최적가치낙찰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파악,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방계약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개산계약제도, 설계 및 타당성 용역 등의 1인 견적수의계약 범위 확대(1천만원→5천만원) 등 금년 10월말까지의 한시적 제도개선은 물론 지방계약법, 동법시행령, 예규 등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거의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모두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 목표를 60%로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비율은 동일한 수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통하여 자금이 집행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단단한 각오 없이는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계약학회는 지방계약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방계약분야 학술연구를 위하여 지난 2008년도에 설립되어 지방계약연구분야의 새로운 핵심역할을 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와 제도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와 같은 경제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데 지방계약학회의 전문적인 연구와 조언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회와 행정안전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통하여 지방계약제도가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국지방계약학회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는 것으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2. 19.